

제주지방법원 2022. 10. 28 선고 2022가단557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성정훈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9. 30.
판 결 선 고 2022. 10. 28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에 관하여 2018. 4. 18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8. 9. 7.
접수 제89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3. 소송비용은 피고가
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송현경

별지